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47

제출년월일 : 1997. 3.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산간계곡수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할 명예감시원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계곡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

- 계곡수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
- 계곡수명예감시원이라 함은 시장이 위촉한자

○ 자격(제3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 계곡수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 주민지도·계몽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자
- 위 자격을 갖춘자로서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 임기(제4조)

-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연장

○ 정수 및 위촉(제5조)

-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10명이내
-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위촉

○ 해촉(제6조)

-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회망할때
- 타지역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때

-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등 부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킬때
-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자

○ 임무(제7조)

- 정기적인 순시활동
- 환경변화,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발견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
- 오염행위단속
-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

○ 활동비 지원(제9조)

-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경우 피복비와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제11조)

- 명예감시원 위촉 및 해촉된자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또는 회수한다

3. 기타참고사항

-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도)
- 사전예고결과 : 의견제출없음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 라 한다)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 라 함은 맑은계곡수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산과 산 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 (이하 "명예감시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곡수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2. 계곡수 보호를 위하여 주민을 지도·계몽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제 4 조 (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정수 및 위촉) ①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 ② 시장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 ③ 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시 【별지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 6 조 (해촉) 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할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사망,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합조적일 때

제 7 조 (임무) 명예감시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
2. 계곡수의 상태 및 계곡수원의 오염등에 현저히 변화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와 오염원이 발견된때 시장에게 즉시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등에 대한 단속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 등

제 8 조 (교육훈련) 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계몽·단속요령 및 환경관련 기본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활동비 지원)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돋기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피복비와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① 명예감시원은 제7조에 의한 단속활동 등을 【별지제4호서식】의 지도·단속신고서에 의거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제출된 지도·단속신고서에 대하여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감시원증의 발급 및 회수시 【별지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발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명예감시원의 관리위임)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명예감시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위 측 장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 측 기 간 : 199 . . . ~ 199 . . .

귀하를 계곡수 명예감시원운영조례제5조에 의한

OO계곡수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199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

【별지2호서식】

계곡수명예감시원증

〈앞면〉

계곡수명예감시원증
사진 30cm × 40cm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계곡수명예 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199 . . .
충 주 시 장 (인)

〈뒷면〉

제 호	
1. 본증 소지자는 계곡수보존 과 소하천 계곡수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지도· 계몽을 임무로 함.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 는 대여할 수 없음.	
유효기간 199 . . . 까지	인
유효기간 199 . . . 까지	인
유효기간 199 . . . 까지	인

○ 색상 : 연록색

○ 치질 : 120L/B

○ 규격 : 6×90cm

【별지3호서식】

계곡수명예감시원증명발급대장

발행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계곡수명	회수일자	비고

【별지4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지도 · 단속 신고서

- 위반자성명 :
 - 위반자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환경오염행위 : (6항원칙칙에 의거 기재)

199 월년

OO계곡수명예감시원 : 주소

성명 (인)

충주시장귀하

○○시군 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 지도·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제 4 조 (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정수 및 위촉)
①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제 6 조 (해촉)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제7조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
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의 발견된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등에 대한 단속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 등

제8조 (교육훈련) 시장·군수는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계몽 단속요령등과 환경관련 기본교육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9조 (활동비 지원)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돋기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 내용을 신고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등의 처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예감시원증표 발급 및 회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게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군 실정상 보완·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적의 보완 및 수정하여 제정·공포·시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7. 1. 1부터 시행토록 조치